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66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조계원 · 민병덕 · 안도걸
소병훈 · 김문수 · 이광희
이개호 · 임미애 · 최혁진
김남희 · 서미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

그럼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6의2. (생 략)</p> <p><u><신 설></u></p> <p>7. (생 략)</p> <p>② (생 략)</p>	<p>제4조(사업) ① ----- -----.</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6의3. <u>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u></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